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87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2016.7.1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해설로 개정한다.
2015.1.23.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2016.7.13.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7.13.>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2016.7.1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해설로 개정한다.
2013.6.10. 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다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별표 4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을 “제9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2015.1.23. 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다목"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 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15.>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 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신설 2008.12.15. >
26. "반사판(디프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 2008.12.15. >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개정 2008.12.15.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 개정 2008.12.15.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 신설 2008.12.15. >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 < 신설 2011.11.24. >
3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써,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 <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 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5.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6. "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7. "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체절운전"이라 함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	

	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2. "조기반응형헤드"라 함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물과 오리피스 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5. "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라 함은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 17. "가지배관"이라 함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8. "교차배관"이라 함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9. "주배관"이라 함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20. "신축배관"이라 함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21. "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라 함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라 함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측까지 배관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4. "반사판(디프렉터)"이라 함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25.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2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함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	---	--

2008.12.15. 개정	제3조(정의) 1.~14. (생략) 15. "유수검지장치"라 함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16.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15.> 17.~23. (생략)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라 함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26. "반사판(디프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15.>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8.12.15.>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제3조제15항 ""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라 함은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유수검지장치"라 함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6항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를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24항 ""건식스프링클러설비"라 함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제25항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제25항을 제27항으로 이동한다. 제3조제26항을 제28항으로 이동한다. 제3조제29항 "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	--	---

2011.11.24. 신설	제3조(정의) 1~22 (현행과 같음)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23. ~ 29 (현행과 같음)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3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제3조22의2호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31호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2013.6.10. 개정	제3조(정의) 1. ~ 30. (현행과 같음) 3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제3조제31호 전단 중 "컨트롤러"를 "제어장치"로 한다.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3.6.10.>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렉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0
		그 밖의 것	20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m³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신설 2012.2.15.> 삭제 <2013.6.11.>

-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5.>

1. 삭제 <2013.6.10.>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써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③ 삭제 <2013.6.11.>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중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중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중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 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인 되도록 할 것 <table><tr><th>소 방 대 상 물</th><th>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th></tr><tr><td>10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하인 소방대상물</td><td>1.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면 물줄을 저장 취급하는 것 30 2. 기타의 것 20</td></tr><tr><td>11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인 소방대상물</td><td>1. 연 별 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백화점·슈퍼마켓·백화점·복합건물로서 판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0 2. 기타의 것 20 3.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것 20 4.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것 10</td></tr><tr><td>11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인 소방대상물 및 지하가</td><td>30</td></tr></table>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10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에 1.6을 곱하여 얻은 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 11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스프링클러헤드 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인 되도록 할 것	소 방 대 상 물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10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하인 소방대상물	1.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면 물줄을 저장 취급하는 것 30 2. 기타의 것 20	11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인 소방대상물	1. 연 별 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백화점·슈퍼마켓·백화점·복합건물로서 판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0 2. 기타의 것 20 3.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것 20 4.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것 10	11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인 소방대상물 및 지하가	30	
소 방 대 상 물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10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하인 소방대상물	1.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면 물줄을 저장 취급하는 것 30 2. 기타의 것 20									
11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인 소방대상물	1. 연 별 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백화점·슈퍼마켓·백화점·복합건물로서 판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0 2. 기타의 것 20 3.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것 20 4.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것 10									
11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인 소방대상물 및 지하가	30									
1984.8.16.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생략) 1. (생략) 2.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이상인 되도록 할 것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양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설치된 헤드의 갯수에 일정수량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도록 하였으나 설치된 헤드의 갯수가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리역학적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큰 수원을 확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조정함(영 제13조제2호).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및 신설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993.11.11.>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table><thead><tr><th>소 방 대 상 물</th><th>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th></tr></thead><tbody><tr><td>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td><td>30</td></tr><tr><td>그 밖의 것</td><td>20</td></tr><tr><td>경,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 수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물</td><td>30</td></tr><tr><td>그 밖의 것</td><td>20</td></tr><tr><td>그 밖의 것</td><td>20</td></tr><tr><td>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의 것</td><td>20</td></tr><tr><td>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의 것</td><td>10</td></tr><tr><td>아파트</td><td>10</td></tr><tr><td>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또는 지하가</td><td>30</td></tr></tbody></table>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미만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②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제5조제2항 및 제3항중 "제6조제2항"은 "제14조제2항"으로, 제5조제5항제8호중 "제6조제1항제14호"는 "제14조제1항제7호"로 본다. <신설 1993.11.11.>	소 방 대 상 물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30	그 밖의 것	20	경,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 수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물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의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의 것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또는 지하가	30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명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에 갖추어야 할 소화수량중 3분의 1은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여 펌프의 고장이나 정전시 화재가 발생하여도 자연수압에 의하여 방사되는 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2)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물탱크·가압송수장치 및 배관에 관한 규정 중 설치위치·배관의 접속·동결방지·점검구·표지 및 급수관의 기준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도록 함(제13조제2항). (3)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수량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소화수량을 48세제곱미터에서 16세제곱미터로 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제13조제1항). (4)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에 갖추어야 할 소화수량중 3분의 1은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여 펌프의 고장이나 정전시 화재가 발생하여도 자연수압에 의하여 방사되는 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소 방 대 상 물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30																					
그 밖의 것	20																					
경,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 수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물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의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하의 것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또는 지하가	30																					
1998.5.12. 개정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 (생략) 1. ~ 2. (생략) ②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제5조제2항 및 제4항중 "제6조제2항"은 "제14조제2항"으로, 제5조제6항제8호중 "제6조제1항제14호"는 "제14조제1항제7호"로 본다.<개정 1998.5.12.>	제13조제2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조제5항제8호"를 "제5조제6항제8호"로 한다.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제13조제1항제1호 표의 소방대상물란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또는 지하가"를																				

2001.7.27. 개정	1993.11.11., 2001.7.27.> 1. ~ 2(생략)  ② (생략)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로 한다.
2002.4.12. 개정	제3관 스프링클러 설비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 (생략) 1. (생략) 2.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표 생략) ② (생략)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해설서	개정 이유
2004.6.4.	제4조(수원) ①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표 생략)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해설로 개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제4조로 이동 제4조제2항제1호에서 6호 신설한다. 제4조제3항 신설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호에서 2호 신설한다. 제4조제5항 신설한다. 제4조제6항 및 제1호에서 제8호 신설한다.

	할 것 ②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내연기관의 기동에 따른 펌프 또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에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③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⑥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	
--	---	--

	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0.22. 개정	제4조(수원) ① (생략)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표 생략) 2. (생략) ②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 3. (생략)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 6 (생략) 7.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③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7호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한다.

	④ (생략) 1. ~ 2.(생략) ⑤ (생략) ⑥ (생략) 1. ~ 8. (생략)	
2012.2.15. 신설 및 개정	제4조(수원) ① (생략) 1~2 (생략) (표 생략)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에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3.2m³를, 50층 이상은 4.8m³를 공급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신설 2012.2.15.>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15.>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운(‘10.10.18)」화재계기 2)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경보)”,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20분 이상 작동”, “경우에 따라 옥상수조의 설치면제가 가능하고” “펌프 및 급수배관을 경우에 따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 가능” 하던 것을 “음향경보는 30층 이상인 건물은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 “30층 이상인 건물은 옥상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펌프·급수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제한” (2)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수원 설치기준(안 제4조 제1항 제3호 신설) ·옥상수조 의무설치(안 제4조 제3항 신설) ·가압펌프 설치기준(안 제5조 제1항 제3의2호 신설) ·가압수조 설치기준(안 제5조 제4항 제1호) ·급수배관 설치기준(안 제8조 제3항 제1의2 신설) ·우선경보방식 설치기준(안 제9조 제1항 제6호 개정, 6의2 신설) ·비상전원의 가압수조방식 설치기준(안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중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중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1.~8. (생략)

제12조 제1항)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12조 제3항 제2호)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제4조제1항제3호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에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3.2㎡를, 50층 이상은 4.8㎡를 공급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신설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효수량외”를 “유효수량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신설한다.

제4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2013.6.10.
개정

제4조(수원) ① (생략)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공급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역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30 그 밖의 것 2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

2. ~ 3. (생략)

② (생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함

제4조제1항제1조의 표 중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장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삭제한다.

같은조제3항 후단 단서” 다만,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1. 삭제 <2013.6.10.> 2. ~ 3. (생략)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5. ~ 7.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15, 개정 2013.6.10.> ④ (생략) ⑤ (생략) 1. ~ 2.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1. ~ 8. (생략)	
2013.6.11. 개정	제4조(수원) ① (생략) 1~3 (생략) 3. 삭제 <2013.6.11.>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③ 삭제 <2013.6.11.> ④ (생략) ⑤ (생략) 1. ~ 2.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1. ~ 8. (생략)	제4조제1항제3호 “3제1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3.2㎡를, 50층 이상은 4.8㎡를 공급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삭제한다.
2015.1.23. 개정	제4조(수원)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 <2013.6.10.> 2. ~ 3. (현행과 같음)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5. ~ 7. (현행과 같음) ③ 삭제 <2013.6.11.>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붕”을 “최상층”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의2. 삭제 <2013.6.11.>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3.6.10.>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9.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12.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개정 2013.6.10.>
 - 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추 것
 - 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15.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_1 + 10$$

H : 필요한 낙차(m)

h_1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_1 + p_2 + 0.1$$

P : 필요한 압력(MPa)

p_1 : 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p_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2.15., 2013.6.11.>

2. 삭 제 <2015.1.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 <2015.1.23.>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정	제15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스프링클러헤드의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리터이상인 성능의 것으로 할 것 3.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가 10이하인 경우에는 800리터이상, 10이상 20이하의 경우에는 1천 600리터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 400리터이상 되도록 할 것 4.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 되도록 할 것 $H = h_1 + h_2 + 10m$ H : 펌프의 양정(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h₂: 낙차(m)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준용할 것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일 되도록 할 것 $H = h_1 + 10m$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P = p_1 + p_2 + 1 \text{ kg/cm}^2$ P : 필요한 낙차(kg/cm²)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kg/cm²)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kg/cm²)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컴프레샤를 설치할 것	
1984.8.16. 개정	제15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12킬로그램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분당 80리터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 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13조제2호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	스프링클러헤드의 선단의 방수압력의 상한을 1제곱센티미터당 12킬로그램이하로 정하여 방수압력의 과다로 인한 물분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효과감소를 방지하도록 함(영제15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12킬로그램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분당 80리터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 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6. 충압펌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1분당 60리터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정격토출량이 1분당 60리터초과 200리터이하인 펌프로써 토출측 배관부근에 유효한 감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살수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시 소화용 급수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8.16.> 7. 그 밖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기준은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② (생략) 1. ~ 2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13조제2호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6. 충압펌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1분당 60리터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정격토출량이 1분당 60리터초과 200리터이하인 펌프로써 토출측 배관부근에 유효한 감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살수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시 소화용 급수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기준은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993.11.11.,> 1. 삭제 <1993.11.11.> 2. ~ 6. (생략) 7.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본다. ② (생략) 1.~ 2. (생략) ③ (생략) 1.~ 2. (생략)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1993.11.11.>]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명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물탱크·가압송수장치 및 배관에 관한 규정 중 설치위치·배관의 접속·동결방지·점검구·표지 및 급수관의 기준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도록 함(제14조제2항). 제14조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를 삭제하고, 제15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7호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본다."를 신설한다.
1995.5.27. 개정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중간가압송수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 ~ 6. (생략) 6. (생략) 가. (생략)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기능을 보강하고, 대규모의 소방대상물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중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제14조제1항). 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중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정격토출량이 1분당 60리터초과 200리터이하인 펌프로서 토출측 배관부근에 유효한 감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살수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시 소화용 급수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1998.5.12. 개정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 . 5(생략) 2. 6. (생략)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생략) 7. (생략) ② (생략) 1.~2 (생략) ③ (생략) 1~.2 (생략)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 제6호 가목중 "더 크도록 할 것"을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으로 한다.
2001.7.27. 개정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993.11.11.,	제14조제1항 제4호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995.5.27., 1998.5.12., 2001.7.27.> 1. ~ 3. (생략) 4.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에 80리터를 공급 양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7 (생략) ② (생략) 1.~2 (생략) ③ (생략) 1~.2 (생략)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9.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1kg/㎠ 이상 12kg/㎠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kg/㎠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해설로 개정한다. 중전의 제14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항부터 15조를 신설한다.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12.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 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2\text{kg}/\text{cm}^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5.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2006.12.30. 신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생략) 1. ~ 15. (생략)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2006.12.30)	제5조제1항제16호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를 신설한다.

	신설) ② (생략) 1. ~ 2.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2008.12.15. 개정 및 신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생략) 1. ~ 15. (생략)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② (생략) 1. ~ 2.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 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제1항제16호 중 일부 단서 “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동조제4항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동조제4항제1호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를 신설한다. 동조제4항제2호 “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를 신설한다. 동조제4항제3호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를 신설한다. 동조제4항제4호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를 신설한다. 동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를 신설한다.
2012.2.15. 신설 및 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생략) 1. ~ 3. (생략) 3의2.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 <신설 2012.2.15> 4. ~ 6. (생략) 7.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8. ~ 13. (생략) 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5~ 16.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제5조제1항제3호의 2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를 신설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규정에”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로 한다.

	③ (생략) 1. ~ 2. (생략) ④ (생략)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2.15> 2. ~ 4 (생략)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 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2013.6.10. 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생략) 1. ~ 3. (생략) 3의2. <삭제 2013.6.10.> 4.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3.6.10.> 8~ 13 (생략) 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② (생략) 1. ~ 2.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④ (생략)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2.15.> 2 ~ 4 (생략)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제5조 제1항 3의 2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을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을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4호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을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 14 제30호에”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로 한다.
2013.6.11. 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생략) 1. ~ 3. (생략) 3의2. 삭제 <2013.6.11 > 4. ~ 16.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③ (생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 2. (생략) ④ (생략)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2.15, 2013.6.11 > 2. 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3. (생략) 4.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생략)	가.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제5조) 1)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이중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중계기 배선 이중배선 설치 제5조제1항제3호의 2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로 한다.
2015.1.23. 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1.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015.1.23.>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2015.1.23.>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제4항제2호 “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및 제4호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5호, 제8조제2항제19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 <개정 2011.11.24.>
-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2.>
-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84.8.16.	제1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10개이하일 경우에는 2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근방의 보기쉬운 곳에 당해장치의 명칭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의 설치기준을 경제적부담을 적게하고도 최대의 소화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완·조정함(영 제16조).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 2 (생략)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계단실형 아파트(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총당 2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한다. 4. 유수검지장치등은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등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에는 가로 0.5미터이상 세로 1미터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는 매층마다 1개이상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계단단위로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외의 소방대상물도 1개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10개이하인 소규모의 경우에는 3개층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제15조제3항). (2)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의 설치위치·점검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도록 함(제15조제4호).

	5. 유수검지장치등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서 흐르는 물만이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11.> [제16조에서 이동 <1993.11.11.>]	
1995.5.27. 개정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995.5.27.> 1.~ 2 (생략)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계단실형 아파트(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고, 복도형아파트등 그외의 아파트는 2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한다. 4. (생략) 5. 유수검지장치등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서 흐르는 물만이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생략)	소방법 시행령의 개정(1994.7.20. 대통령령 제14,334호)으로 아파트 11층이상의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를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용구)를 추가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파트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복도형아파트의 경우는 방호구역을 1개층이하에서 2개층이하로,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간격은 2.3미터에서 3.2미터로 각각 완화함(제15조제3호).
2001.7.27. 개정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2001.7.27.> 1. ~ 4. (생략)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생략)	제15조 본문중 "방호구역"을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유수검지장치등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서 흐르는 물만이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를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2002.4.12. 개정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995.5.27., 2001.7.27., 2002.4.12.> 1. (생략)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15조 제2호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유수검지장치등은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등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에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유수검지장치등은 실내에

	3. (생략) 4. 유수검지장치등은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등을 기계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5. ~ 6. (생략)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등을 기계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등을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등을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으로 개정한다.

	7. 공동주택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2008.12.15. 개정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 (생략)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5. (생략)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중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유수검지장치”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유수검지장치”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일부 단서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를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유수검지장치등”을 “유수검지장치”로 하고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을 “유수검지장치실”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유수검지장치등”을 “유수검지장치”로 한다. 제6조제7호 “공동주택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으로 한다.
2009.10.22. 개정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2 (생략)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2.> 4. ~ 7. (생략)	제6조제3호 중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를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로 한다.
2011.11.24. 개정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현행과 같음) 1. ~6. (현행과 같음)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제6조제7항 중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로 한다.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개정 2008.12.15.>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 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16조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①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층을 2개 이상 4개 이하의 방수구역으로 나누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1분당 5천리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방수구역을 4개 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수구역은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한 방수구역과 중복되도록 하여야 한다.	
1984.8.16. 개정	제17조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16조제4호의 기준에 의할 것	소방법시행령의 개정(1984. 6. 30, 대통령령 제11,461호)으로 새로이 소방시설로 규정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비상조명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스프링클러설비·배연설비기타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기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제16조를 제17조로 이동 및 제목 개정 본문 전면 개정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3.11.11. 개정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3 (생략)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15조제4호의 기준에 의할 것 [제17조에서 이동 <1993.11.11.>]	제16조(중전의 제17조)제4호중 "제16조 제4호"를 "제15조 제4호"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2004.6.4.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중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화재안전기준(NFSC_103) 제7조로 이동한다.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6조 제4호의 기준에 따를 것	
2008.12.15. 개정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1~3 (현행과 같음)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 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개정 2008.12.15.>	제7조제4호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를 것"을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으로 한다.

제8조(배관)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3.6.10., 2016.7.13.>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3.6.10., 개정 2016.7.13.>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신설 2016.7.13.>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3.6.10., 개정 2016.7.13.>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신설 2016.7.13.>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 <신설 2016.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축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1.11.24.>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1의2. 삭제 <2013.6.11.>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 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⑩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15.>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개정 2008.12.15.>
 -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⑫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mm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 ⑮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 ⑮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 및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⑯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1.24.>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⑰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3.6.10.>
- ⑱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개정 2013.6.10., 2015.1.23.>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17조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① 급수관의 구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가지관상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8개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반자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습식스프링클러설비는 교차관의 말단에 나사식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습식스프링클러설비는 그 가지관 및 헤드드롭니풀안에 침전물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향식의 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각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 주관으로부터 가장 먼 스프링클러배관 말단에 구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이 동결되지 아니하도록 동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입상관에는 구경 50밀리미터이상의 배수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이를 준용한다.	
1984.8.16.	제18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 급수배관의 구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아래와 반자속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의 헤드의 개수)는 8	1) 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설치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배관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배관상의 침전물축적을 방지하는 한편 하나의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를 8개이하로 제한하여 화

개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오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 소화전 호오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회향식 배관으로 할 것 ④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200분의 1 이상 기울기로 할 것 2.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입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⑤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을 제거한 것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⑥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에 8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재시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능의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1항 부터 제3항). 2) 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시로 그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5항). 3) 차장에 포소화설비 대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겨울철에 스프링클러설비가 동파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8조제8항). 제18조제1항부터제8항까지 개정 및 제9항을 신설한다.
---	---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⑦입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⑨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이를 준용한다.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 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1.11.> ②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아래와 반자속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의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1.11.>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오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 소화전 호오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생략) 1. ~ 3. (생략) 가. ~ 다. (생략) ⑤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명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됨(1992.12.24, 법률 제4,419호, 1993. 7.28. 대통령령 제13,701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완화 또는 개선하여 소방행정의 쇄신을 기하려는 것임.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로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의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에서도 분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제17조제3항제3호). 제17조(종전 제18조)제1항중 "급수배관"을 "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에서 분기할 수 있다. 제17조(종전 제18조)제5항제2호후단을 다음

	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생략) 1. ~ 3.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1. ~ 2. (생략)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쪽의 배관에 설치된 배수밸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자물쇠장치로 잠그고 그 열쇠를 관할소방서에 보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1.11.> ⑩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본다. <개정 1993.11.11.> [전문개정 1984.8.16.] [제18조에서 이동 <1993.11.11.>]	과 같이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중전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쪽의 배관에 설치된 배수밸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자물쇠장치로 잠그고 그 열쇠를 관할소방서에 보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본다.
1995.5.27.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 (생략) ②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아래와 반자속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의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5.5.27.> 1. 최고사용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서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2. 진폭이 5밀리미터, 진동수는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부터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③ (생략) 1~3. (생략)	소방설비의 기능향상 및 내구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비의 주요 구성품인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축광식표지, 비상콘센트, 내화·내열전선에 관한 성능기준을 명시함(제17조제2항)

	④ (생략) 1~3. (생략) ⑤ (생략) 1~3. (생략) ⑥ (생략) 1~3.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1~2 (생략) ⑨ (생략) ⑩ (생략)	
1998.5.12. 개정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 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경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1.11., 1998.5.12.> ②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아래와 반자속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의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하고, 기존의 방호구역내에서 칸막이등으로 구획될 경우에는 9개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5.5.27., 1998.5.12.> 1. 최고사용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서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2. 진폭이 5밀리미터, 진동수는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부터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③ (생략) 1~ 2 (생략)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5.12.> 1. 삭제 <1998.5.12.> 2. ~ 3 (생략) ⑤ ~⑧ (생략)	제17조제1항 중 "구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를 "구경은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8개이하로 하고"를 "8개이하로 하고, 기존의 방호구역내에서 칸막이등으로 구획될 경우에는 9개이하로 할 수 있으며"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를 "배관의 부대설비"로 하고, 동항제1호 "1.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200분의 1이상 기울기로 할 것"을 삭제하며, 동조제9항 본문중 "개폐밸브(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쪽의 배관에 설치된 배수밸브를 포함한다)"를 "개폐밸브"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11., 개정 1998.5.12.> ⑩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1998.5.12.>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8.5.12.> ⑪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본다. 다만,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5.12.>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 (생략) ②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 스프링클러에 격자형 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구경)등을 수리학(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방수압) 및 방수량(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격자형 배관으로 설치하는 습식 스프링클러에 대하여는 펌프의 용량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스프링클러의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7조 제2항제2호나목).

	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고사용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나. 진폭을 5밀리미터, 진동수를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부터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4천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③ (생략) 1~ 3. (생략) ④ (생략) 1. ~ 3 (생략) ⑤ ~⑪ (생략)	
2001.7.27. 개정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③ (생략) 1 ~ 2(생략)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생략) 1 ~ 3 (생략) ⑤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1 ~ 3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1 ~ 2(생략) ⑨ (생략) ⑩ (생략) 1 ~ 2(생략) ⑪ (생략)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에서 헤드에 이르는 배관을 가지배관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제3항제3호 단서).
2002.4.12.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 급수배관(수원 및	제17조제1항중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

개정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경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1초당 6미터,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초당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1.11., 2001.7.27., 2002.4.12.>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오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 소화전 호오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생략) 1 ~ 3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1 ~ 2(생략) ⑨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생략) 1 ~ 2(생략) ⑪ (생략)	에 의한"을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교차관"을 "교차배관"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개정 및 신설	제8조(배관) ①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0kg/cm²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으로 개정한다. 제17조를 제8조로 이동한다. 제8조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신설한다.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③급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④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⑤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스프링클러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고사용압력은 $14\text{kg}/\text{cm}^2$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나. 진폭을 5mm, 진동수를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3.5\text{kg}/\text{cm}^2$ 부터 $35\text{kg}/\text{cm}^2$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⑩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되 청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⑪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⑫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⑭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mm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⑮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⑯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	
--	--	--

	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 및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⑰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⑱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7.12.28 신설	제8조(배관)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③ 1~ 3 (생략) ④ 1 ~ 2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생략) ⑩ (생략) ⑪ (생략) ⑫ (생략) 1~ 3 (생략) ⑬ (생략) 1~ 3 (생략) ⑭ (생략) ⑮ (생략) 1 ~ 2 (생략) ⑯	제8조제19항 “분기개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1~ 3 (생략) ⑰ 1 ~ 2 (생략) ⑱ (생략) ⑲ 분기개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 받은 것으로 한다.	
2008.12.15. 개정	제8조(배관)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③ 1~ 3 (생략) ④ 1 ~ 2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생략) ⑩ (생략) 1. ~ 3. (생략)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15.>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개정 2008.12.15> 가. ~ 나. (생략) 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⑫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3. (생략) ⑬ (생략)	제8조 11항 중 “일제개방밸브”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로 한다. 제8조 11항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을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으로 한다. 제8조 제11항 제2호 다목 중 “나목의 규정에 따른”을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12항 중 “유수검지장치”를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로 하며 일부 단서 “다만,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제8조 제12항 제2호 중 “개방형헤드”를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로 한다. 제8조 제15항 제15호 중 일부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 제17항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한다. 제8조 제18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배관”으로 한다.

	1. ~ 3 (생략) ⑭ (생략) ⑮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1. ~ 2. (생략) ⑯ (생략) 1. ~ 3. (생략) ⑰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1.24. > 1. ~ 2. (생략) ⑱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3.6.10. > ⑲ (생략)	
2011.11.24. 개정	제8조(배관)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1.11.24. > ③ 1~ 3 (생략) ④ 1 ~ 2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생략) ⑩ (생략) ⑪ (생략) ⑫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1~ 3 (생략) ⑬ (생략) 1~ 3 (생략) ⑭ (생략) ⑮ (생략) 1 ~ 2 (생략) ⑯	제8조제2항제3호 본문 중 “반자를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을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로 한다.

	1~ 3 (생략) ⑰ 1 ~ 2 (생략) ⑱ (생략)	
2012.2.15. 신설 및 개정	제8조(배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1의2.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 <신설 2012.2.15> 2. (생략)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 제1항 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s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1. ~ 2.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1. ~ 2.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생략) 1. ~ 2. (생략) 가. ~ 나. (생략) 3. (생략) 가. ~ 다. (생략) ⑩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 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2. (생략)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을 신설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 본문 중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제5조 제1항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본문 중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제3항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을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로 한다.

	분기할 수 있다. ⑪ (생략) 1. ~ 2. (생략) 가. ~ 다. (생략) ⑫ (생략) 1. ~ 3. (생략) ⑬ (생략) 1. ~ 3. (생략) ⑭ (생략) ⑮ (생략) 1. ~ 2. (생략) ⑯(생략) 1. ~ 3. (생략) ⑰ (생략) 1. ~ 2. (생략) ⑱ (생략) ⑲ (생략)	
2013.6.10. 개정	제8조(배관)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③ 1~ 3 (생략)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전단 중 “적색으로”를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으로 한다.

	④ 1 ~ 2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생략) ⑩ (생략) ⑪ (생략) ⑫ (생략) 1~ 3 (생략) ⑬ (생략) 1~ 3 (생략) ⑭ (생략) ⑮ (생략) 1 ~ 2 (생략) ⑯ 1~ 3 (생략) ⑰ 1 ~ 2 (생략) ⑱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3.6.10> ⑲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1)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MPa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2)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8항)
2015.1.23. 개정	제8조(배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⑨ (생략) 1 ~ 2 (생략)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8조제2항·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9항제3호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조제19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호 전문개정 2015.1.23.] ⑩ (생략) ⑪ (생략) ⑫ (생략) 1~ 3 (생략) ⑬ (생략) 1~ 3 (생략) ⑭ (생략) ⑮ (생략) 1 ~ 2 (생략) ⑯ 1~ 3 (생략) ⑰ 1 ~ 2 (생략) ⑱ (생략) ⑲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2016.7.13. 개정 및 신설	제8조(배관)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개정 2013.6.10., 2016.7.13.>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신설 2013.6.10., 개정 2016.7.13.>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신설 2016.7.13.>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신설 2013.6.10., 개정 2016.7.13.>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신설 2016.7.13.>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신설 2016.7.13.> ② (생략)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계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생략) ③ ~ ⑲ (생략)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8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6의2. 삭제 <2013.6.11.>
7.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3.6.10.>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9.10.22.>
-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개정 2011.11.24.>
 -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개정 2008.12.15.>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

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발신부를 설치하고, 발신부에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각 방수구역마다 유효하게 유수 또는 압력변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설비를 한 경우에는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하나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할 수 있다. 3.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부를 설치하되, 수신부에는 소방대상물의 층별 또는 방수구역별로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헤드의 개폐여부를 알수 있는 표시장치 및 비상전원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②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작동 또는 화재감지용헤드의 개방에 의한 압력검지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에 의한 유수검지장치 또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것.	
1984.8.16. 개정	제19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발신되고 그에 따라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경보장치가	소방법시행령의 개정(1984. 6. 30, 대통령령 제11,461호)으로 새로이 소방시설로 규정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비상조명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스프링클러설비·배연설비기타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기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작동되도록 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제 81조 내지 제90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3. 경보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구역마다 설치하고 그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한 경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4. 경보장치의 음색은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할 것. ②스프링클러설비의 수신부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을 것 2.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을 것 3.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입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을 것 4. 수원 및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표시 기능이 있을 것 5.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 스위치를 설치할 것 6.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 또는 작동중단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할 것 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8. 수신부에는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9.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신부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③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2. 폐쇄형의 하향식헤드(드라이펜던트형을 제외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담당구역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2개이상의 감지회로방식)으로 하고 각 회로상의 화재감지기	는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18조를 제19조로 이동한다. 제18조 전면 개정한다.
---	---

	의 동시감지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작동될 수 있게 할 것 [전문개정 1984.8.16.]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음향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1993.11.11.> ③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됨 (1992.12.24, 법률 제4,419호, 1993. 7.28. 대통령령 제13,701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완화 또는 개선하여 소방행정의 쇄신을 기하려는 것임. (1) 이 규칙의 제명을 "소방기술기준규칙"으로 바꿈. (2)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종류·경보방식·배치거리·음향장치·제어반헤드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도록 함(제18조제1항).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감지장치는 교차회로로 하던 것을 복합형감지기를 사용할 때에는 교차회로의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교차회로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개수는 종전에 설치하던 개수의 2분의 1로 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제18조제4항). 제18조(종전 제19조)제목중 "경보설비"를 "음향장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

	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2. 폐쇄형의 하향식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향식헤드를 드라이펜던트형으로 설치한 때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화재감지기는 열감지기·복합형감지기·연기감지기(축적형에 한한다)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지기의 그 밖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2배로 한다. 5. 화재감지기회로에는 제88조의 기준에 의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16.] [제19조에서 이동 <1993.11.11.>]	방밸브의 담당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음향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종전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폐쇄형의 하향식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향식헤드를 드라이펜던트형으로 설치한 때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로 설치한 때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화재감지기는 열감지기·복합형감지기·연기감지기(축적형에 한한다)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지기의 그 밖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	---	---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2배로 한다. 5. 화재감지기회로는 제88조의 기준에 의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995.5.27. 개정	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 ③(생략) ④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995.5.27.> 1. (생략)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5.5.27.>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생략)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2배로 한다. 5. (생략)	제18조제4항제2호 본문중 "폐쇄형의 하향식헤드를"을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로 하고, 동호 가목 "화재감지기는 열감지기·복합형감지기·연기감지기(축적형에 한한다)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을 을 삭제하며, 동호 나목을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한 때"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2배로 한다."로 한다.
1998.5.12. 개정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 ③(생략) ④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1. (생략) 2. (생략)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생략)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5. (생략)	제18조제4항제2호에 가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으로 신설하고, 동호 나목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바닥면적의 2배로 한다"를 "바닥면적으로 한다"로 한다.
2002.4.12.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이렌은

개정	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2002.4.12.> 1. ~ 3. (생략)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5.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④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2002.4.12.> 1. ~ 2. (생략) 가. ~ 나. (생략) 3. (생략)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5. (생략)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 후단중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를 "제85조제3항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으로 개정한다. 제18조를 제9조로 이동하며 본문을 전문 개정한다.

	것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5.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6.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7.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②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③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	---	--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008.12.15. 개정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생략) 1. ~ 2. (생략)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가. (생략)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② (생략)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 (생략)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 ~ 2. (생략) 가. ~ 나. (생략)	제9조제1항제3호 “유수검지장치”를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90폰”을 “90dB”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유수검지장치”를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로 하며, “유수검수장치”를 “동장치”로 하고, 제9조제3항 “일제개방밸브”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일제개방밸브”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 단서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개정 2008.12.15.> 4. (생략)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가. ~ 다. (생략)	
2009.10.22. 개정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생략) 1. ~ 7. (생략)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 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9.10.22.> ③ (생략) 1. ~ 2. (생략)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나. (생략) 3~ 5. (생략)	제9조 제2항 제2호 중 “일제개방밸브”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로 한다.
2011.11.24. 개정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생략) 2. ~ 7.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개정 2011.11.24.> 나. (생략) 3 ~ 5. (생략)	제9조제3항제2호제가목 중 “는 경우”를 “거나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로 한다.
2012.3.6. 개정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생략) 1. ~ 5. (생략)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9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 (생략) 가. ~ 나.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가. ~ 나. (생략) 3. (생략)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2.3.6.> 5. (생략) 가. (생략)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생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9조제3항제4호 후단 중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2013.6.10. 개정	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생략) 1. ~ 6. (생략)	제9조제2항제1호 중 “동장치”를 “유수검지장치”로 하고,

가. ~ 다. (생략) 6의2. (생략) 가. ~ 다. (생략) 7. (생략) 가. ~ 나. (생략) ② (생략)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3.6.10> 2.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가. (생략)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3. (생략)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설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5. (생략) 가. ~ 다. (생략)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로 한다.
--	---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대부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15., 2013.6.1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 ④ 영 별표 5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1)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 ⑥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 시 온 도
39℃ 미만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	0.3m 미만일 것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 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20조 (스프링클러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반자와 닥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미터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락크식창고의 경우 준위험물 또는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하마다, 이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미터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정·반자·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무대부·영 별표 3의 준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및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미터이하 2. 락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미터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이하) ④ 무대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 온도
설씨 39도미만	설씨 79도미만
설씨 39도미상 설씨 64도 미만	설씨 79도미상 설씨 121도미만
설씨 64도미상 설씨 106도미만	설씨 121도미상 설씨 162도미만
설씨 106도미상	설씨 162도미상

⑥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반자·선반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밑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5. 천정의 기울기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정의 마루와 평행되게 하고, 천정의 마루를 중심으로 한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는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게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천정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동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위측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상단으로부터의 수직거리는 15센티미터이하, 부착면과의 수평거리는 20센티미터이하가 되게 할 것.
7. 콘베이어 및 에스컬레이터의 주위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그 주위가 협소한 경우에는 그 주위의 내측에 직경 25센티미터의 반구형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 4.5미터미만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미터이상 9미터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벽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게할 것.

	⑦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table><tr><th>스프링클러헤드와 보의 수평거리</th><th>스프링클러헤드와 보의 하단높이의 수직거리</th><th>천정으로부터 헤드까지의 수직거리</th></tr><tr><td>0.75미터미만</td><td></td><td>0.3미터이하(천정 높이 불연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0.45미터이하)</td></tr><tr><td>0.75미터이상 1미터미만</td><td>0.1미터미만</td><td></td></tr><tr><td>1미터이상 1.5미터미만</td><td>0.15미터미만</td><td></td></tr><tr><td>1.5미터이상</td><td>0.3미터미만</td><td></td></tr></table>	스프링클러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와 보의 하단높이의 수직거리	천정으로부터 헤드까지의 수직거리	0.75미터미만		0.3미터이하(천정 높이 불연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0.45미터이하)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0.1미터미만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0.15미터미만		1.5미터이상	0.3미터미만							
스프링클러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와 보의 하단높이의 수직거리	천정으로부터 헤드까지의 수직거리																				
0.75미터미만		0.3미터이하(천정 높이 불연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0.45미터이하)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0.1미터미만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0.15미터미만																					
1.5미터이상	0.3미터미만																					
1984.8.16. 개정	제20조 (스프링클러헤드)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④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⑤ (생략) ⑥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 ~ 6 (생략) 7. 삭제 <1984.8.16.> 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 4.5미터미만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미터이상 9미터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놓이 되도록 3.6미터이내마다 설치할 것 ⑦ 제6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table><tr><th>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th><th>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th></tr><tr><td>0.75미터미만</td><td>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td></tr><tr><td>0.75미터이상 1미터미만</td><td>0.1미터미만일 것</td></tr><tr><td>1미터이상 1.5미터미만</td><td>0.15미터미만일 것</td></tr><tr><td>1.5미터이상</td><td>0.3미터미만일 것</td></tr></table>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미터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0.1미터미만일 것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0.15미터미만일 것	1.5미터이상	0.3미터미만일 것	소방법시행령의 개정(1984. 6. 30, 대통령령 제11,461호)으로 새로이 소방시설로 규정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비상조명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스프링클러설비·배연설비기타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기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제20조제4항 본문중 “무대부에 있어서는”를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로 한다. 제20조제6항제7호 “콘베이어 및 에스컬레이터의 주위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그 주위가 협소한 경우에는 그 주위의 내측에 직경 25센티미터의 반구형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중 “마주보는 벽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놓이 되게 할 것”을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놓이 되도록 3.6미터이내마다 설치할 것”으로 한다. 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table><tr><th>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th><th>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th></tr><tr><td>0.75미터미만</td><td>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td></tr><tr><td>0.75미터이상 1미터미만</td><td>0.1미터미만일 것</td></tr><tr><td>1미터이상 1.5미터미만</td><td>0.15미터미만일 것</td></tr><tr><td>1.5미터이상</td><td>0.3미터미만일 것</td></tr></table>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미터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0.1미터미만일 것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0.15미터미만일 것	1.5미터이상	0.3미터미만일 것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미터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0.1미터미만일 것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0.15미터미만일 것																					
1.5미터이상	0.3미터미만일 것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미터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0.1미터미만일 것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0.15미터미만일 것																					
1.5미터이상	0.3미터미만일 것																					
개정 (년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제19조 (스프링클러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다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미터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3.11.11.>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미터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다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무대부·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미터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미터이하

3. (생략)

④ (생략)

⑤(생략)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 온도
설씨 39도미만	설씨 79도미만
설씨 39도미상 설씨 64도미만	설씨 79도미상 설씨 121도미만
설씨 64도미상 설씨 106도미만	설씨 121도미상 설씨 162도미만
설씨 106도미상	설씨 162도미상

⑥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993.11.11.>

1. (생략)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반자·선반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3. (생략)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종류·경보방식·배치거리·음향장치·제어반헤드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도록 함(제19조제3항).

제19조(중전의 제20조)제1항 중 "천정 또는 반자와"를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랙크식창고의 경우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취급"을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으로, "이외의 것"을 "그 밖의 것"으로 하며,

동조제3항본문중 "반자·선반등"을 "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다트·선반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무대부·영 별표 3의 준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및 영 별표 4"를 "무대부·영 별표 4"로 하며,

동항제2호중 "랙크식"을 "랙크식"으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20조)제6항제2호본문중 "부착면"을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에 단서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위측"을 "상하좌우"로, "상단으로부터의 수직거리는 15센티미터이하, "부착면과의 수평거리는 20센티미터이하가 되게 할 것"을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

1993.11.11.
개정

	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생략)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 8. (생략) ⑦ (생략) (표 생략) [제20조에서 이동 <1993.11.11.>]	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년도)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10조(헤드) ①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랙식창고의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B)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③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④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으로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제7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공동주택에는 조기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C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⑦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밑으로 30c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	---	--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⑧제7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2011.11.24. 개정	제10조(헤드) ① ~ ⑥ (생략) ⑦ (생략) 1. ~ 6. (생략)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가. ~ 다. (생략) 8. ~ 9 (생략) ⑧ (생략) (표 생략)	제10조제7항제7호 본문 중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를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로 하고 “각목의 1”를 “가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2012.2.15. 개정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	제10조제1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03B)의 규정”을 “103B)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무대부·소방기본

	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2.15.> ③ (생략)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개정 2012.2.15.> 2.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개정 2012.2.15.> ④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⑤ (생략) 1. ~ 2.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1. ~ 2 (생략)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2.15>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5> 5. (생략) 가. ~ 나. (생략) 6. ~ 7. (생략) 가. ~ 다. (생략) 8. ~ 9. (생략)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법시행령 별표 2"를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로 하며, 같은항제4호 본문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조제4항 본문중 "제3호가목의 규정"을 "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조제7항제3호 본문 중 "제2호의 규정에"를 "제2호에도"로 하고, 같은항제4호 단서 중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하며, 같은조제8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2013.6.10. 개정	제10조(헤드) ① (생략)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제10조2항 단서 중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B)"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으로 하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 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③ (생략) 1. ~ 2. (생략)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15., 2013.6.10.> ④ ⑤ (생략) 1. ~ 2.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1. ~ 5 (생략) 가. ~ 나. (생략) 6. ~ 7. (생략) 가. ~ 다. (생략) 8. ~ 9. (생략)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같은조제3항제3호 중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며, 같은조제8항 단서 중 “중심”을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 한다.
--	--	---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들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3개를 넘을 경우에는 3개로 한다). 6.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드립장치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1984.8.16.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생략) 1. ~ 5 (생략) 6.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장치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제21조제6호중 "자동드립장치"를 "자동배수장치"로 한다.
개정 (년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33.11.11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 5. (생략) 6.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 제3호·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에서 이동 <1993.11.11.>]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됨 (1992.12.24, 법률 제4,419호, 1993. 7.28. 대통령령 제13,701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완화 또는 개선하여 소방행정의 쇄신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이 규칙의 제명을 "소방기술기준규칙"으로 바꿈. 스프링클러설비의 옥외송수구는 화재시 고층에서 떨어지는 유리창등의 낙하물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진압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20조 (종전의 제21조) 본문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제1호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를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로 한다. 동조제2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를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제6호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장치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를,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3호·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1995.5.27. 개정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995.5.27.> 1. ~ 4 (생략)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생략) [제21조에서 이동 <1993.11.11.>]	제20조제5호 단서 “(3개를 넘을 경우에는 3개로 한다).”를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조문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서 “화재안전기준”으로 변경 제20조에서 제11조로 이동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에서 송수구로 변경 제11조제7호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08.12.15	제11조(송수구) (생략) 1. ~ 7 생략)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신설 2008.12.15.>	제11조제8호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를 신설한다.
2013.6.10.	제11조(송수구) (현행과 같음)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8. (현행과 같음)	제11조제1호 본문 중 “송수구는”을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로 한다.

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2016.7.13.>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6.7.13.>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3.6.11.>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7.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신설 2011.11.24.>
 - 가.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 다.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 나. 소방부하 검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검용으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 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검용으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9.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신설 2011.11.24.>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준하여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84.8.16. 개정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 설치에 대하여는 제10조 각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화재시 펌프가 자동기동되도록 비상전원에 갈음하여 내연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준하여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 설치에 대하여는 제10조 각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화재시 펌프가 자동기동되도록 비상전원에 갈음하여 내연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개정 (년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 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②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제3항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내무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22조에서 이동 <1993.11.11.>]	전문개정
1998.5.12. 개정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① (생략) 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제3항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2.>	제21조제3항 본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12조(전원)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	---	-------------

2008.12.15. 개정	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1. ~ 2. (생략)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 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③ (생략) 1.~3. (생략)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5. (생략)	제12조제1항 후단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는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서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4호 본문중 “비상전원”을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로 한다.
2011.11.24. 신설	제12조(전원) ① (생략) 1. ~ 2.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 5 (생략) 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7.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신설 2011.11.24> 가.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제12조제3항제6호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한다. 제12조제3항제8호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 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을 신설한다.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신설 2011.11.24.> 다.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신설 2011.11.24.>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가.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 <신설 2011.11.24.> 나.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와 겸용일 경우에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다만, 모든 부하의 합계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용률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는 1로 하고, 비상부하는 1 또는 국토해양부 건축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9.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신설 2011.11.24.>	
2012.3.6. 개정	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2.15 >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3제2항제2호에 따라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2.15 > ③ (생략) 1. (생략)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13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 9 (생략)	
2013.6.10. 개정	제12조(전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1. (현행과 같음) 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 7 (생략)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제12조제2항 단서 중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를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른”으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9. (현행과 같음)	
--	--	--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개정 2013.6.10., 2015.1.23.>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울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3.6.10.>
-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6.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나. 수조 또는 물울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회로

- 마. 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6.10.>
-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개정 2013.6.10.>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13.6.10.>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13.6.10.>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은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울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회로 마.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개폐밸브의 개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됨 (1992.12.24, 법률 제4,419호, 1993. 7.28. 대통령령 제13,701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완화 또는 개선하여 소방행정의 쇄신을 기하려는 것임. 이 규칙의 제명을 "소방기술기준규칙"으로 바꿈.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종류·경보방식·배치거리·음향장치·제어반헤드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도록 함(제22조제2항). 제22조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

	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③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1993.11.11.]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1993.11.11.>]	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③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개정 이유
2004.6.4.	제13조(제어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전면 개정

	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 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	
--	---	--

	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6.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회로 마.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08.12.15. 신설 및 개정	제13조(제어반) ① (생략) 1.~3. (생략)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② (생략)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제13조제1항제4호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을 삭제할 것
2011.11.24. 개정	제13조(제어반) ① (생략) 1. (생략) 가. ~ 나. (생략)	제13조제5항 및 제1호부터3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

	2. ~ 4.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 5.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가. ~ 나. (생략) (1)~ (2) (생략) 다. ~ 마. (생략) 4. ~ 8 (생략) 9. (생략) ④ (생략). 1. ~ 3. (생략) ⑤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항목이 포함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4> 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신설 2011.11.24>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기타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가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할 것 <신설 2011.11.24> 3. 발전기가 과부하에 도달될 경우에는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 상태를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할 것 <신설 2011.11.24>	기 컨트롤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항목이 포함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기타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가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할 것 3. 발전기가 과부하에 도달될 경우에는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 상태를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할 것
2013.6.10. 개정	제13조(제어반) ①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 ~ 4. (생략)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1. (생략)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3.6.10> 3. ~ 5.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가. (생략)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1)~ (2) (생략) 다. (생략)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작동시키거나 작동음"을 "작동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다음 각 세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를 "별표 5 제5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을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마. (생략) 4. ~ 8. (생략) 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④ (생략). 1. ~ 3. (생략)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임”을 “보존형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부하에 비상전원이”를 “비상부하에 전원이”로 하며 “상태가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할”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2015.1.23. 개정	제13조(제어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015.1.23.>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제1호”를 “가목”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배선 등)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6.10.>
-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개정 (년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10조의2의 기준에 의한 배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1993.11.11.]	본조신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14조(배선 등) ①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	

	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 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2013.6.10. 개정	제14조(배선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0>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제2항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으로 한다.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12.15., 2011.11.24.>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개정 2008.12.15.>
9. 삭제<2013.6.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개정 2008.12.15.>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 ②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

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MPa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2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제외) ①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중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의 것으로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끝매기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있고,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4제곱미터이하이며, 개구부마다 감중 방화문을 설치한 부분 2. 제11조 각호의 장소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의 거리가 1.5미터미만인 부분 6. 천정·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정과 반자의 거리가 1미터미만인 부분 7.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인 부분	
1984.8.16. 개정	제2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제외) ① (생략) 1. ~ 2 (생략) ② (생략) 1. 계단실·경사로·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③제20조제6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84.8.16.>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미터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 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0.4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인 되도록 할 것	제23조제2항제1호중 "계단실" 다음에 "경사로"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드렌처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제3항).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방수량이 1분당 20리터이상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년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23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① 삭제 <1993.11.11.>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8.16., 1993.11.11.>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닥트·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 4. (생략) 5.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반자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바닥 하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미만인 부분 6. 천정·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미터미만인 부분 7.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인 부분 8. 펌프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중 반자에 천정사이의 거리가 2미터이하인 반자속, 아파트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 냉장 및 냉동창고, 정수장, 오물처리장, 펄프공장등 화재발생 위험이 없는 곳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제23조제2항). 제23조제목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헤드"로 하고, 동조제1항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동조2항제1호중 "경사로"를 "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닥트"로 하고, 동항제5호를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반자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바닥 하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미만인 부분"로 하며, 동항제6호 및 제7호중 "반자의 거리"를 각각 "반자사이의 거리"로 하고,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반자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바닥 하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미만인 부분 8. 펌프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등의 가공공장에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③제19조제6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84.8.16., 1993.11.11.> 1. ~ 2 (생략)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방수량이 1분당 60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등의 가공공장에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동조제3항본문중 "제20조제6항제6호"를 "제19조제6항제6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0.4세제곱미터"를 "1.6세제곱미터"로 하며, 동항 제4호중 "20리터"를 "60리터"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23조가 제15조로 이동 스프링헤드의 설치제외 -> 헤드의 설치제외 제목 변경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②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m³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kg/cm²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008.12.15. 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12.15.>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계단실”을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로 하며 “파이프덕트”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8호중 “펌프실·물탱크실”을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강기실”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1호 중 “냉장창고”를 “영하의 냉장창고”로 한다.

	2.~ 7. (생략)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강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개정 2008.12.15.> 9.~10. (생략)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개정 2008.12.15.>	
2011.11.24 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생략)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12.15, 2011.11.24> 2. ~ 13. (생략) 가. ~ 다. (생략) 14.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2013.6.10. 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생략) 1. ~ 9 (생략) 9. 삭제 <2013.6.10> 10. ~ 14. (생략)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② (생략) 1. ~ 5. (생략)	제15조제1항중 제9호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를 삭제하고, 동조제15호 “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를 신설한다.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이유
2004.6.4..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1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	현행과 같음

	니할 수 있다.	
--	----------	--

제18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7.1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9.8.24. 신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2011.11.24 개정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1.11.24>	제1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11월 23일”로 한다.
2016.7.13. 개정	제18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7.13.>	전면 개정

부칙 <제2016-87호,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배관)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전 연혁법령인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1982.9.15.)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3.11.11.)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